

심사보고서

【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】

의안번호
제267호

2016. 3. 11.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연원일 및 발의자 : 2016. 3. 3.(곽복추 의원 등 15명)
- 나. 회부일자 : 2016. 3. 4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. 3. 11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전문성이 부족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수립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·운영 등 지원근거 마련.(안 제4조의5, 별표 1, 별지 제9호서식 신설)
-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·운영 개요
 - ▶ 구성인원 : 30명 이내
 - 위촉기준 :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유경험자

▶ 자문대상 : 3천만원 이상의 공사·용역 사업

- 자문대상 제외 : 공동주택 분쟁, 일반민원, 재개발, 재건축, 리모델링 등

▶ 자문분야

-공사부문(10) : 토목, 급배수, 전기, 가스, 승강기, 건축, 도장, 위생, 방수, 조정 등

-용역부문(5) : 청소, 소독, 회계, 계약, 경비 등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길원)

○ 그간 공동주택 관리에 전문지식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바, 이를 개선하여 아파트 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공동주택 비리근절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를 지원하는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없 음

5. 토론 요지

○ 없 음

6. 심사결과

○ 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